

파주시 제3땅굴및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6
----------	--------

제출년월일 : 2002. 4. 13.

제출자 : 파주시장

□ 수정이유

- 제3땅굴 관광개발사업으로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시설관리 및 운영이 개선됨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서틀엘리베이터와 DMZ 영상관, 그리고 도라산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등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됨
- 그러나 사업완료 후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비등 각종 운영비등의 비용의 부담발생과 투자재원의 회수를 감안하면 시설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수정코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정함.(안 별표)
 - 개인 : 일반인 3,000원 → 4,000원
어린이 · 청소년 2,000원 → 3,000원
 - 단체 : 일반인 2,500원 → 3,000원
어린이 · 청소년 1,500원 → 2,000원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체육과(☎ 940-4363)
입안자	문화체육과장	박재홍
	관광정책담당	김진성
	담당자	이성근

[별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개 인	일반인	4,000원
	어린이·청소년	3,000원
단 체	일반인	3,000원
	어린이·청소년	2,000원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구 분		금액	구 분		금액
개인	일반인	<u>3,000</u>	개인	일반인	<u>4,000</u>
	어린이·청소년	<u>2,000</u>		어린이·청소년	<u>3,000</u>
단체	일반인	<u>2,500</u>	단체	일반인	<u>3,000</u>
	어린이·청소년	<u>1,500</u>		어린이·청소년	<u>2,000</u>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청소년 : 만 7세이상 18세이하의 자(초·중·고등학생)
2. 일반인 : 만 19세 이상인자
3.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민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5.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6.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7. 현역군인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권) 시장은 시설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체육과(☎ 940-4363)
입 안 자	문화체육과장	박 재 홍
	관광정책담당	김 진 성
	담 당 자	이 성 근

[별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구 분		금 액
개 인	일반인	3,000원
	어린이·청소년	2,000원
단 체	일반인	2,500원
	어린이·청소년	1,500원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

□ 수정이유

- 제3땅굴 관광개발사업으로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시설관리 및 운영이 개선됨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셔틀엘리베이터와 DMZ 영상관, 그리고 도라산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등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됨.
- 그러나 사업완료 후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운영비등 비용의 부담발생과 투자재원의 회수를 감안하면 시설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수정코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정함. (안 별표)
 - 개 인 : 일반인 3,000원 → 4,000원
어린이·청소년 2,000 → 3,000원
 - 단 체 : 일반인 2,500원 → 3,000원
어린이·청소년 1,500원 → 2,000원

□ 검토의견

- 동 수정안은 2002년 3월 7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보류되었던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사용료 조정)하여 2002년 4월 13일 집행부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으며 4월 15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건으로써,

-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등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증설하는등 현행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의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동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다만, 사용료징수등 필요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동 조례안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지방제정법

제26조 (國家의 公共施設에 관한 使用料) ①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管理하는 國家의 公共施設로서 地方自治團體가 그 管理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共施設의 사용에 대한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使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